**임대인의 전세계약 만료 통보**

안녕하세요, 저는 000아파트 00동 00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.  
저는 임차인과 체결한000 아파트 전세계약에 관하여 갱신을 거절합니다. 따라서 위 전세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,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년 12월 10일에 종료됩니다.

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해주셔야 합니다.